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인



2015년 1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80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약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적”을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한다.

제3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별표1부터 별표6까지 적용

제3조제2호 및 제3호 중 “별표1”을 각각 “별표1부터 별표6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성희롱"을 "성희롱,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관련도와"를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5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단서 신설>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1 적용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4 징계의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1. -----
----- .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별표1부터 별표6까지 적용

2. -----

---- 별표1부터 별표6까지 --

3. -----
---- 별표1부터 별표6까지 --

제5조(징계의 감경) ① -----

----- . -----

창안상으로써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공적

3.·4. (생략)

② (생략)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3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 -----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군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5년 1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훈령 제319호

군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현행)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표(제6조 제1항 관련)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무 기 계 약 전환자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행 정 보조원					
계	273	125	21	4	6	8	86	40	41	57	4	6
본청 소계	167	67	18	3	6	5	35	26	41	24	4	5
공보담당관	2	2	1				1					
감사담당관	1	1					1					
새만금지원 담당관	1	1					1					
총 무 과	20	6		1		3	2			14		
기획예산과	1	1					1					
회 계 과	1	1					1					
세 무 과	2	2					2					
징 수 과	1	1					1					
민원봉사과	6	6		2			4					
지역경제과	2	2					2					
투자지원과	3	3	2				1					
해양수산과	1	1					1					
산림녹지과	5	1					1				4	
주민생활 지원과	1	1				1						
복지지원과	1	1				1						
여성아동 복지과	3	2	1				1					1
문화예술과	8	4	2				2			4		
관광진흥과	6	2	2									4
체육진흥과	14	11	10				1			3		
환경위생과	2	2					2					
자원순환과	45	1					1		41	3		
건 설 과	27	1					1	26				
건 축 과	1	1					1					
교통행정과	7	7			6		1					
토지정보과	6	6					6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무 기 약 전환자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행 정 보조원					
직속기관 소 계	26	22		2			20			4		
보 건 소	17	15					15			2		
농업기술 센 터	9	7		2			5			2		
사 업 소 소 계	72	28	4				24	14		29		1
수 도 과	20	4	1				3	4		12		
하 수 과	11	1	1					10				
예술의전 당 관리과	9	2					2			7		
시립도서관 관 리 과	20	12					12			7		1
철새생태 관 리 과	5	2	2							3		
차량등록 사 업 소	7	7					7					
의회사무국 소 계	8	8					3	5				
의회사무국	8	8					3	5				

【별표 1】 (개정안)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표(제6조 제1항 관련)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청원 산림 보호 직원	무 기 계 약 전환자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행 정 보조원					
계	273	125	25	3	7	9	81	40	41	57	4	6
본청 소계	167	67	18	3	7	4	35	26	41	24	4	5
공보담당관	1	1					1					
감사담당관	1	1					1					
총 무 과	18	6		1		3	2			12		
기획예산과	1	1					1					
새 만 금 국제협력과	1	1					1					
회 계 과	2	1					1			1		
세 무 과	2	2					2					
징 수 과	1	1					1					
민원봉사과	6	6		1			5					
지역경제과	2	2					2					
투자지원과	3	3	2				1					
해양수산과	1	1					1					
산림녹지과	5	1					1				4	
환경위생과	2	2					2					
자원순환과	45	1		1					41	3		
어 린 이 행 복 과	1	1					1					
복지지원과	2	2	2									
가 족 청 소 년 과	3	2	1				1					1
문화예술과	9	4	2				2			5		
관광진흥과	5	1	1									4
체육진흥과	14	11	10				1			3		
건 설 과	28	2			1		1	26				
건 축 과	1	1					1					
교통행정과	7	7			6		1					
토지정보과	6	6					6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 경찰	청원 산립 보호직원	무 기 약 전 환 자
		소계	시설물·장비유지관리인부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단속·감시현장인부	단순잡역조무인부	행 정 보조원					
직속기관 소 계	27	21	3			2	16			6		
보 건 소	17	14					14			3		
농업기술센터	10	7	3			2	2			3		
사업소 소 계	71	29	4				25	14		27		1
수 도 과	20	4	1				3	4		12		
하 수 과	11	1	1					10				
예술의전당관리과	9	3					3			6		
시립도서관 관리과	19	12					12			6		1
철새생태관리과	5	2	2							3		
차량등록사업소	7	7					7					
의회사무국 소 계	8	8				3	5					
의회사무국	8	8				3	5					

군산시 공고 제 2015 - 83호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금강철새도래지 인접시군인 서천군과 생태관광 인프라 공유를 통한 선린 상생의 관계를 마련
- 민선6기 시정 중심 공약사업인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금강 철새조망대 어린이(초등학생) 입장료를 무료화하여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

2. 주요 내용

- 서천군민 금강철새조망대 입장료 군산시민과 동일 요금 적용
-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금강철새조망대 어린이(초등학교) 입장료 무료
- 매표시간, 관람시간 명확하게 규정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

3. 조례일부개정안 : 붙임

4. 신구문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월 26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철새생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843 군산시 철새로 120

군산시청 철새생태관리과(전화 : 063-454-5683, FAX : 063-453-7321,
전자우편 : ktho1325@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철새생태관리과 관리계(전화 063-454-5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의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를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로 수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시설에 입장하여 시설물, 전시품 또는 조망대를 관람·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천군민은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입장료를 적용하고, 어린이(초등학생) 관람객은 무료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5항의 “제2항”을 “제1항”으로 수정한다.

제8조의 제목 “입장료 면제 및 감면”을 “입장료 면제”로 하고, 같은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관람시간”을 “관람 및 매표시간”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시간 : 10시00분 ~ 17시00분
2. 관람시간 : 10시00분 ~ 18시00분

[별표 1] 은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 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자연환경 보전법」 <u>제42조</u> 에 -----.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자연환경 보전법」 <u>제38조</u> 에 -----.
제7조(입장료 및 입장권) ① 시설에 입장하여 시설물, 전시품 또는 조망대를 관람·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u>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	제7조(입장료 및 입장권) ① 시설에 입장하여 시설물, 전시품 또는 조망대를 관람·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u>“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천군민은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입장료를 적용하고, 어린이(초등학생) 관람객은 무료로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삭 제)
③ ~ ④ 생략	② ~ ③ (항 변경)
⑤ <u>제2항</u> 에 따른 -----.	④ <u>제1항</u> 에 따른 -----.
제8조(입장료 면제 및 감면) ----- -----.	제8조(입장료 면제) ----- -----.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입장자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u>	⑤ (삭 제)
제9조(관람시간) ① <u>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u>	제9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u>시설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u>

현 행	개 정 안																																												
1. <u>하절기(3월 1일 ~ 10월 31일) : 10시 00분 ~ 19시 00분</u> 2. <u>동절기(11월 1일 ~ 다음해 2월말) : 10시 00분 ~ 18시 00분</u> 별표 1 시설입장료 (제7조제2항과 관련) (단위 : 원)	1. <u>매표시간 : 10시 00분 ~ 17시 00분</u> 2. <u>관람시간 : 10시 00분 ~ 18시 00분</u> 별표 1 시설 입장료 (단위 :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개 인</th> <th>단 체</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성 인</td> <td>2,000</td> <td>1,000</td> <td></td> </tr> <tr> <td>청소년·군인</td> <td>1,000</td> <td>700</td> <td></td> </tr> <tr> <td>어린이</td> <td>500</td> <td>300</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2,000	1,000		청소년·군인	1,000	700		어린이	500	300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개 인</th> <th colspan="2">단 체</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타지역</th> <th>군산시</th> <th>타지역</th> <th>군산시</th> </tr> </thead> <tbody> <tr> <td>성 인</td> <td>2,000</td> <td>1,000</td> <td>1,000</td> <td>500</td> <td></td> </tr> <tr> <td>청소년·군인</td> <td>1,000</td> <td>500</td> <td>700</td> <td>300</td> <td></td> </tr> <tr> <td>어린이</td> <td></td> <td>무 료</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타지역	군산시	타지역	군산시	성 인	2,000	1,000	1,000	500		청소년·군인	1,000	500	700	300		어린이		무 료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2,000	1,000																																											
청소년·군인	1,000	700																																											
어린이	500	300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타지역	군산시	타지역	군산시																																									
성 인	2,000	1,000	1,000	500																																									
청소년·군인	1,000	500	700	300																																									
어린이		무 료																																											
별표 2 <u>시설입장료(감면) (제8조제5항 관련)</u>	별표 2 (삭 제)																																												

〈 현 행 안 〉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로 설치한 철새생태관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어린이”란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 교도대원 및 공익근무 요원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7. “민간위탁”이란 일정기간 동안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의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민간위탁) 철새생태관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내 각종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시설내에 설치된 회전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이용승인)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교육,

세미나, 학습등을 위하여 무료로 시설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시물 관람과 학습 등을 하고자 입장하는 경우에 제7조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휴무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무한다.

제7조(입장료 및 입장권) ① 시설에 입장하여 시설물, 전시품 또는 조망대를 관람·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입장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 발매기로 판매를 할 수 있다.

④ 자동발매기로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입장권 규격과 도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입장료는 입장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면제 및 감면) 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이용을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방하여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람시간 종료이후에 회전식당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2조 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우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입장자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제9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1일~10월 31일) : 10시 00분 ~ 19시 00분
2. 동절기(11월 1일~다음해 2월말) : 10시 00분 ~ 18시 00분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세입관리)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날 근무일 이내에 일반 회계에 세입조치하고 관련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4.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의 시장이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행위제한) ① 입장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난무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의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책임) 입장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훼손하였을 경

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설치등) ① 군산세계철새축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 종합추진계획의 수립
2.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 발굴 · 육성
3. 축제의 주최와 행사진행
4.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간 긴밀한 협조
5. 축제후 자체평가를 통한 향후 발전방향 모색
6. 그 밖의 축제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조류, 환경관련 전문가
2. 축제와 관련 있는 지역주민
3. 축제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철새생태 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군산세계철새축제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2011.08.01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입장료(제7조제2항과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2,000	1,000	
청 소 년 · 군 인	1,000	700	
어 린 이	500	300	

[별표 2]

시설 입장료(감면) (제8조제5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1,000	500	
청 소 년 · 군 인	500	300	
어 린 이	300	200	

〈 개 정 안 〉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로 설치한 철새생태관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어린이”란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 교도대원 및 공익근무 요원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7. “민간위탁”이란 일정기간 동안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의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민간위탁) 철새생태관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내 각종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시설내에 설치된 회전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이용승인)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교육, 세미나, 학습등을 위하여 무료로 시설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시물 관람과 학습 등을 하고자 입장하는 경우에 제7조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휴무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무한다.

제7조(입장료 및 입장권) ① 시설에 입장하여 시설물, 전시품 또는 조망대를 관람·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천군민은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입장료를 적용하고, 어린이(초등학생) 관람객은 무료로 한다.

② 입장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 발매기로 판매를 할 수 있다.

③ 자동발매기로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입장권 규격과 도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입장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면제) 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이용을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방하여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람시간 종료이후에 회전식당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는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2조 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우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시설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시간 : 10시00분 ~ 17시00분
2. 관람시간 : 10시00분 ~ 18시00분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세입관리)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날 근무일 이내에 일반 회계에 세입조치하고 관련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4.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의 시장이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행위제한) ① 입장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난무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의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책임) 입장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설치등) ① 군산세계철새축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 종합추진계획의 수립
2.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 발굴·육성
3. 축제의 주최와 행사진행
4.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간 긴밀한 협조
5. 축제후 자체평가를 통한 향후 발전방향 모색
6. 그 밖의 축제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조류, 환경관련 전문가
2. 축제와 관련 있는 지역주민
3. 축제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철새생태 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군산세계철새축제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강철새조망대 입장료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타지역	군산시	타지역	군산시	
성 인	2,000	1,000	1,000	500	
청 소 년 · 군 인	1,000	500	700	300	
어 린 이		무	료		

군산시 고시 제 2015 - 1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 12.

군 산 시 장

- 1. 사업명 : 군산 당북리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신축공사
- 2. 사업주체 : 변경없음
 - 가. 명 칭 : 에스엠주택건설주식회사
 - 나. 대표자 : 장길현
 - 다.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51, 대산빌딩5층
- 3. 시공사 : 변경
 - 가. 명 칭 : 주식회사대광건영
 - 나. 대표자 : 조태석
 - 다.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24
- 4. 사업내용 : 변경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61-1외 76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나. 대지면적 : 21,073m²
 - 다. 건축면적 : 4,014.5817m²
 - 라. 연면적 : 67,272.6949m²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5동 29층, 469세대

바.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비고
84A형	민영주택	380	84.9959	24.7825	109.7784	
84B형	민영주택	46	84.9949	26.3697	111.3646	
84C형	민영주택	43	84.9768	26.5761	111.5529	

사.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 사업비 : 107,706,240천원

자. 사업기간 : 2015년 03월 02일 ~ 2017년 08월 31일

5.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건축위치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61-1번지의외 77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61-1번지의외 76필	1필지 제외
대지면적	21,075.00m ²	21,073.00m ²	감 2.00m ²
시공사	(유)디엔에스 대표이사 유민섭	(주)대광건영 대표이사 조태석	

6. 설계도서 : 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7. 주택법 제17조 1항에 의한 고시 : 지구단위계획 관련사항

8.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5. 1. 9.

9.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6	군산 에스엠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당북리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61-1번지 일원	증)25,066	감) 2	25,064	

나.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결정사유
변경	46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61-1번지 일원	○면적변경 - 25,066㎡ → 25,064㎡ (감 2㎡)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변경 및 공동주택용지 면적감소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BL	25,066	감) 2	25,064	1-①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61-1번지 일원	21,075	감) 2	21,073	공동주택용지
1-②					군산시 지곡동 49-8번지 일원	2,743	-	2,743	도로용지 (중로2-138)	
1-③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45번지 일원	1,248	-	1,248	도로용지 (소로2-612, 소로2-619)	

다.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① 라.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군산시 공고 제2015-13호

2015년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1항에 의거 2015년 1월 16일 현재 군산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번호	병/의원명	전화번호	주소
1	군산가정의학과의원	063-468-0900	군산시 의료원로 121
2	군산메디베베소아청소년과의원	063-468-0005	군산시 수송안길 50
3	군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	063-468-3333	군산시 공단대로 388
4	미소가정의학과의원	063-464-0301	군산시 칠성로 126
5	김봉가정의학과의원	063-471-0371	군산시공단대로563(3층)
6	김주완소아청소년과의원	063-466-2203	군산시 축동1길 7
7	중앙가정의학과의원	063-442-3300	군산시 팔마로 131
8	누가병원	063-450-0900	조촌동 777
9	다나소아청소년과의원	063-460-0100	군산시 문화로 83
10	미래와여성산부인과의원	063-441-1100	군산시 문화로 164
11	미즈아이산부인과의원	063-464-7000	나운2길 28
12	사랑가정의학과의원	063-467-4506	군산시 문화로 31 우상빌딩 1층
13	서울의원	063-466-7061	군산시 동아로 148 2층
14	세린소아청소년과의원	063-443-1980	군산시 미원로 128
15	소망가정의학과의원	063-452-7582	군산시 양안로 130 시영A 상가 202호
16	심현섭소아청소년과의원	063-463-8275	군산시 미룡로 32
17	쑥쑥소아청소년과의원	063-465-7579	군산시 월명로 144
18	엘소아청소년과의원	063-462-7582	군산시 하나운로 67
19	양지산부인과의원	063-467-0055	군산시 상나운안길 61
20	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	063-460-3800	군산시 월명로 205 3층
21	은혜산부인과의원	063-460-7400	군산시월명로144
22	전라북도군산의료원	063-472-5000	군산시의료원로27
23	전종울소아청소년과의원	063-466-2508	군산시 대학로 316 시민프라자 403호
24	위드소아청소년과의원	063-471-1221	군산시 월명로 192
25	하늘산부인과의원	063-461-1616	군산시 대학로361

2015. 1. 16.

군 산 시 

군산시 고시 제2015-14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군산시 관리 지적도근점(3점),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어은.내초)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지적도근점(63점), 미군 사용 송유관 매장지역 지적 현황측량에 따른 지적도근점(21점), 연도 해안일주 경관도로 조성사업 기초측량에 따른 지적도 근점(16점)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 13.

군 산 시 장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원체고 (m)							
1	52420	X	270607.24	35°56'08"	X	370914.06	중부	5.357	대야면 접산리 1378	2014. 6.12.	철재
		Y	189053.19	126°52'46"	Y	189125.74					
2	52421	X	270500.16	35°56'05"	X	370806.98	중부	5.482	대야면 접산리 1379	2014. 6.12.	철재
		Y	189029.16	126°52'45"	Y	189101.71					
3	52422	X	270314.16	35°55'59"	X	370620.98	중부	5.719	대야면 접산리 1376	2014. 6.12.	철재
		Y	188993.08	126°52'44"	Y	189065.64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 영 원 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4	52423	X	272368.36	35°57'03"	X	372674.54	중 부	4.136	내초동 380	2014. 11.6.	철재	
		Y	163316.62	126°35'39"	Y	163389.09						
				27.8198								
5	52424	X	272382.48	35°57'04"	X	372688.66	중 부	4.014	내초동 380	2014. 11.6.	철재	
		Y	163343.97	126°35'40"	Y	163416.45						
				27.6971								
6	52425	X	272407.96	35°57'05"	X	372714.14	중 부	3.962	내초동 380	2014. 11.6.	철재	
		Y	163381.56	126°35'42"	Y	163454.03						
				27.6458								
7	52426	X	272433.76	35°57'05"	X	372739.94	중 부	3.991	내초동 380	2014. 11.6.	철재	
		Y	163419.59	126°35'43"	Y	163492.07						
				27.6761								
8	52427	X	272463.14	35°57'06"	X	372769.33	중 부	3.970	내초동 380	2014. 11.6.	철재	
		Y	163463.00	126°35'45"	Y	163535.47						
				27.6555								
9	52428	X	272492.31	35°57'07"	X	372798.49	중 부	4.040	내초동 295	2014. 11.6.	철재	
		Y	163506.15	126°35'47"	Y	163578.63						
				27.7259								
10	52429	X	272455.66	35°57'06"	X	372761.85	중 부	4.412	내초동 297	2014. 11.6.	철재	
		Y	163531.21	126°35'48"	Y	163603.68						
				28.0981								
11	52430	X	272428.95	35°57'05"	X	372735.14	중 부	4.298	내초동 254	2014. 11.6.	철재	
		Y	163485.57	126°35'46"	Y	163558.05						
				27.9842								
12	52431	X	272389.59	35°57'04"	X	372695.77	중 부	4.191	내초동 269	2014. 11.6.	철재	
		Y	163446.83	126°35'44"	Y	163519.31						
				27.8766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 영 원 점	정 표 고 (m)	소 재 지	관 측 일 자	표 지 재 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타 원 체 고 (m)	
				경도 (도-분-초)									
				X	Y								
13	52432	X	272372.03	35°57'03"	X	372678.21	중 부	4.031	내초동 246	2014. 11.6.	철재		
		Y	163401.61	126°35'43"	Y	163474.08							
				27.7161									
14	52433	X	272335.42	35°57'02"	X	372641.60	중 부	3.949	내초동 235	2014. 11.6.	철재		
		Y	163351.33	126°35'41"	Y	163423.81							
				27.6333									
15	52434	X	272292.07	35°57'01"	X	372598.25	중 부	4.031	내초동 283	2014. 11.6.	철재		
		Y	163361.36	126°35'41"	Y	163433.83							
				27.7163									
16	52435	X	272336.64	35°57'02"	X	372642.82	중 부	4.115	내초동 272	2014. 11.6.	철재		
		Y	163422.47	126°35'43"	Y	163494.95							
				27.8008									
17	52436	X	272355.66	35°57'03"	X	372661.85	중 부	4.337	내초동 280	2014. 11.6.	철재		
		Y	163469.80	126°35'45"	Y	163542.28							
				28.0239									
18	52437	X	272393.63	35°57'04"	X	372699.81	중 부	4.350	내초동 263	2014. 11.6.	철재		
		Y	163506.50	126°35'47"	Y	163578.97							
				28.0365									
19	52438	X	272421.70	35°57'05"	X	372727.89	중 부	4.493	내초동 299	2014. 11.6.	철재		
		Y	163554.28	126°35'49"	Y	163626.75							
				28.1808									
20	52439	X	272386.80	35°57'04"	X	372692.98	중 부	4.540	내초동 384	2014. 11.6.	철재		
		Y	163577.96	126°35'50"	Y	163650.44							
				28.2285									
21	52440	X	272359.08	35°57'03"	X	372665.27	중 부	4.632	내초동 293	2014. 11.6.	철재		
		Y	163528.65	126°35'48"	Y	163601.13							
				28.32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 영 원 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22	52441	X	272320.09	35°57'02"		X	372626.28	중 부	4.755	내초동 319	2014. 11.6.	철재
		Y	163494.01	126°35'46"		Y	163566.49					
				28.4427								
23	52442	X	272304.54	35°57'01"		X	372610.73	중 부	4.561	내초동 283	2014. 11.6.	철재
		Y	163448.26	126°35'44"		Y	163520.74					
				28.2475								
24	52443	X	272276.70	35°57'00"		X	372582.88	중 부	4.322	내초동 285	2014. 11.6.	철재
		Y	163407.20	126°35'43"		Y	163479.68					
				28.0078								
25	52444	X	272239.79	35°56'59"		X	372545.97	중 부	4.284	내초동 302	2014. 11.6.	철재
		Y	163373.42	126°35'41"		Y	163445.90					
				27.9696								
26	52445	X	272253.57	35°56'60"		X	372559.75	중 부	4.296	내초동 377	2014. 11.6.	철재
		Y	163342.13	126°35'40"		Y	163414.61					
				27.9813								
27	52446	X	272178.93	35°56'57"		X	372485.11	중 부	4.708	내초동 377	2014. 11.6.	철재
		Y	163359.41	126°35'41"		Y	163431.89					
				28.3946								
28	52447	X	272188.76	35°56'57"		X	372494.94	중 부	5.349	내초동 305	2014. 11.6.	철재
		Y	163385.20	126°35'42"		Y	163457.68					
				29.0357								
29	52448	X	272223.90	35°56'59"		X	372530.09	중 부	4.788	내초동 388	2014. 11.6.	철재
		Y	163438.40	126°35'44"		Y	163510.88					
				28.4753								
30	52449	X	272188.31	35°56'57"		X	372494.49	중 부	5.323	내초동 389	2014. 11.6.	철재
		Y	163462.21	126°35'45"		Y	163534.69					
				29.0108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 영 원 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31	52450	X	272189.96	35°56'58"		X	372496.14	중 부	5.238	내초동 389	2014. 11.6.	철재
		Y	163521.40	126°35'47"		Y	163593.88					
				28.9268								
32	52451	X	272245.78	35°56'59"		X	372551.96	중 부	4.786	내초동 311	2014. 11.6.	철재
		Y	163483.96	126°35'46"		Y	163556.44					
				28.4742								
33	52452	X	272292.22	35°57'01"		X	372598.40	중 부	4.843	내초동 320	2014. 11.6.	철재
		Y	163512.92	126°35'47"		Y	163585.40					
				28.5316								
34	52453	X	272324.01	35°57'02"		X	372630.19	중 부	4.736	내초동 337	2014. 11.6.	철재
		Y	163553.63	126°35'49"		Y	163626.10					
				28.4244								
35	52454	X	272352.13	35°57'03"		X	372658.32	중 부	4.653	내초동 368	2014. 11.6.	철재
		Y	163601.44	126°35'50"		Y	163673.91					
				28.3428								
36	52455	X	272292.73	35°57'01"		X	372598.92	중 부	4.778	내초동 356	2014. 11.6.	철재
		Y	163633.32	126°35'52"		Y	163705.79					
				28.4683								
37	52456	X	272262.08	35°57'00"		X	372568.27	중 부	4.828	내초동 344	2014. 11.6.	철재
		Y	163593.72	126°35'50"		Y	163666.19					
				28.5176								
38	52457	X	272244.07	35°56'59"		X	372550.25	중 부	4.957	내초동 323	2014. 11.6.	철재
		Y	163545.57	126°35'48"		Y	163618.05					
				28.6462								
39	52458	X	272199.84	35°56'58"		X	372506.03	중 부	5.133	내초동 389	2014. 11.6.	철재
		Y	163575.50	126°35'49"		Y	163647.98					
				28.8229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원체고 (m)							
40	52459	X	272213.60	35°56'58"	X	372519.79	중부	5.050	내초동 389	2014. 11.6.	철재
		Y	163626.50	126°35'52"	Y	163698.97					
				28.7416							
41	52460	X	272241.11	35°56'59"	X	372547.30	중부	4.951	내초동 376	2014. 11.6.	철재
		Y	163668.61	126°35'53"	Y	163741.09					
				28.6427							
42	52461	X	272262.41	35°57'00"	X	372568.60	중부	4.981	내초동 374	2014. 11.6.	철재
		Y	163687.61	126°35'54"	Y	163760.09					
				28.6733							
43	52462	X	272297.71	35°57'01"	X	372603.89	중부	4.220	내초동 377	2014. 11.6.	철재
		Y	163331.92	126°35'40"	Y	163404.40					
				27.9045							
44	52463	X	266141.72	35°53'42"	X	366448.08	중부	4.936	옥구읍 어은리 2088	2014. 11.6.	철재
		Y	170359.27	126°40'21"	Y	170431.82					
				28.7994							
45	52464	X	266069.37	35°53'40"	X	366375.73	중부	4.822	옥구읍 어은리 2088	2014. 11.6.	철재
		Y	170329.67	126°40'20"	Y	170402.23					
				28.6849							
46	52465	X	266004.81	35°53'38"	X	366311.17	중부	4.621	옥구읍 어은리 2088	2014. 11.6.	철재
		Y	170303.14	126°40'19"	Y	170375.70					
				28.484							
47	52466	X	266010.33	35°53'38"	X	366316.69	중부	4.991	옥구읍 어은리 2039	2014. 11.6.	철재
		Y	170341.31	126°40'20"	Y	170413.87					
				28.855							
48	52467	X	266048.83	35°53'39"	X	366355.20	중부	4.942	옥구읍 어은리 2041	2014. 11.6.	철재
		Y	170371.06	126°40'21"	Y	170443.62					
				28.806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49	52468	X	266103.44	35°53'41"	X	366409.80	중부	4.975	옥구읍 어은리 2026	2014. 11.6.	철재
		Y	170379.55	126°40'22"	Y	170452.10					
				28.839							
50	52469	X	266089.82	35°53'40"	X	366396.18	중부	5.133	옥구읍 어은리 2023	2014. 11.6.	철재
		Y	170421.42	126°40'23"	Y	170493.98					
				28.997							
51	52470	X	266040.17	35°53'39"	X	366346.53	중부	5.122	옥구읍 어은리 2034	2014. 11.6.	철재
		Y	170409.05	126°40'23"	Y	170481.60					
				28.986							
52	52471	X	265991.08	35°53'37"	X	366297.44	중부	5.047	옥구읍 어은리 2050	2014. 11.6.	철재
		Y	170378.36	126°40'22"	Y	170450.92					
				28.911							
53	52472	X	265984.70	35°53'37"	X	366291.06	중부	4.983	옥구읍 어은리 2045	2014. 11.6.	철재
		Y	170412.32	126°40'23"	Y	170484.87					
				28.848							
54	52473	X	266018.33	35°53'38"	X	366324.69	중부	5.241	옥구읍 어은리 2069	2014. 11.6.	철재
		Y	170445.04	126°40'24"	Y	170517.60					
				29.106							
55	52474	X	266065.55	35°53'40"	X	366371.91	중부	5.303	옥구읍 어은리 2057	2014. 11.6.	철재
		Y	170461.81	126°40'25"	Y	170534.37					
				29.168							
56	52475	X	266101.45	35°53'41"	X	366407.81	중부	5.510	옥구읍 어은리 2021	2014. 11.6.	철재
		Y	170459.98	126°40'25"	Y	170532.53					
				29.375							
57	52476	X	266004.04	35°53'38"	X	366310.41	중부	5.444	옥구읍 어은리 2065	2014. 11.6.	철재
		Y	170496.67	126°40'26"	Y	170569.22					
				29.310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58	52477	X	265960.66	35°53'36"	X	366267.02	중부	5.158	옥구읍 어은리 2078	2014. 11.6.	철재
		Y	170470.95	126°40'25"	Y	170543.50					
				29.024							
59	52478	X	265935.95	35°53'35"	X	366242.31	중부	5.382	옥구읍 어은리 2085	2014. 11.6.	철재
		Y	170524.26	126°40'28"	Y	170596.82					
				29.249							
60	52479	X	265894.30	35°53'34"	X	366200.66	중부	6.309	옥구읍 어은리 2099	2014. 11.6.	철재
		Y	170552.75	126°40'29"	Y	170625.30					
				30.176							
61	52480	X	266070.03	35°53'40"	X	366376.40	중부	4.944	옥구읍 어은리 1539	2014. 11.6.	철재
		Y	170580.79	126°40'30"	Y	170653.34					
				28.811							
62	52481	X	265981.21	35°53'37"	X	366287.58	중부	5.622	옥구읍 어은리 2087	2014. 11.6.	철재
		Y	170545.42	126°40'28"	Y	170617.97					
				29.489							
63	52482	X	266026.26	35°53'38"	X	366332.62	중부	5.569	옥구읍 어은리 2062	2014. 11.6.	철재
		Y	170546.85	126°40'28"	Y	170619.40					
				29.436							
64	52483	X	266048.60	35°53'39"	X	366354.96	중부	5.343	옥구읍 어은리 2060	2014. 11.6.	철재
		Y	170503.26	126°40'27"	Y	170575.81					
				29.209							
65	52484	X	266101.45	35°53'41"	X	366407.81	중부	9.121	옥구읍 어은리 1509-87	2014. 11.6.	철재
		Y	170538.27	126°40'28"	Y	170610.82					
				32.988							
66	52485	X	266121.20	35°53'41"	X	366427.56	중부	5.277	옥구읍 어은리 2021	2014. 11.6.	철재
		Y	170418.18	126°40'23"	Y	170490.74					
				29.141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 영 원 점	정 표 고 (m)	소 재 지	관 측 일 자	표 지 재 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타 원 체 고 (m)	
				경도 (도-분-초)									
				X	Y								
67	52486	X	273659.97	35°57'46"	X	373966.18	중 부	1.917	내초동 187-11	2014. 11.17.	철재		
		Y	165587.75	126°37'10"	Y	165660.24							
				25.637									
68	52487	X	273452.67	35°57'39"	X	373758.88	중 부	4.204	내초동 187-34	2014. 11.17.	철재		
		Y	165726.05	126°37'15"	Y	165798.54							
				27.928									
69	52488	X	273279.97	35°57'33"	X	373586.18	중 부	4.167	내초동 227-4	2014. 11.17.	철재		
		Y	165734.66	126°37'15"	Y	165807.15							
				27.893									
70	52489	X	273074.46	35°57'27"	X	373380.68	중 부	4.301	내초동 227-4	2014. 11.17.	철재		
		Y	165703.68	126°37'14"	Y	165776.18							
				28.027									
71	52490	X	272492.03	35°57'08"	X	372798.25	중 부	2.847	내초동 212-7	2014. 11.17.	철재		
		Y	165631.35	126°37'11"	Y	165703.86							
				26.576									
72	52491	X	272053.28	35°56'53"	X	372359.50	중 부	2.472	내초동 212-7	2014. 11.17.	철재		
		Y	165523.93	126°37'07"	Y	165596.45							
				26.200									
73	52492	X	271559.29	35°56'37"	X	371865.51	중 부	2.719	내초동 213-13	2014. 11.17.	철재		
		Y	165506.14	126°37'07"	Y	165578.67							
				26.450									
74	52493	X	271533.47	35°56'37"	X	371839.70	중 부	3.826	개사동 1219	2014. 11.17.	철재		
		Y	165858.20	126°37'21"	Y	165930.72							
				27.564									
75	52494	X	271408.93	35°56'33"	X	371715.16	중 부	4.097	옥서면 옥봉리 407-80	2014. 11.17.	철재		
		Y	166096.73	126°37'30"	Y	166169.26							
				27.842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 영 원 점	정 표 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76	52495	X	271374.08	35°56'31"	X	371680.32	중 부	3.492	옥서면 옥봉리 407-61	2014. 11.17.	철재
		Y	166290.97	126°37'38"	Y	166363.50					
				27.242							
77	52496	X	271143.09	35°56'24"	X	371449.33	중 부	4.446	옥서면 옥봉리 423-5	2014. 11.17.	철재
		Y	166371.17	126°37'41"	Y	166443.70					
				28.198							
78	52497	X	270965.23	35°56'18"	X	371271.47	중 부	5.407	옥서면 옥봉리 427-10	2014. 11.17.	철재
		Y	166453.53	126°37'45"	Y	166526.06					
				29.163							
79	52498	X	269570.92	35°55'33"	X	369877.16	중 부	6.089	옥서면 선연리 393-2	2014. 11.17.	철재
		Y	165458.65	126°37'05"	Y	165531.22					
				29.834							
80	52499	X	269714.38	35°55'37"	X	370020.62	중 부	5.069	옥서면 선연리 384-25	2014. 11.17.	철재
		Y	165402.16	126°37'03"	Y	165474.72					
				28.812							
81	52500	X	269938.68	35°55'45"	X	370244.92	중 부	6.541	옥서면 옥봉리 848-1	2014. 11.17.	철재
		Y	165541.19	126°37'08"	Y	165613.74					
				30.284							
82	52501	X	269962.20	35°55'46"	X	370268.44	중 부	5.675	옥서면 선연리 224-2	2014. 11.17.	철재
		Y	165720.88	126°37'15"	Y	165793.44					
				29.421							
83	52502	X	270146.37	35°55'52"	X	370452.61	중 부	8.147	옥서면 옥봉리 812-3	2014. 11.17.	철재
		Y	165844.09	126°37'20"	Y	165916.64					
				31.894							
84	52503	X	270412.77	35°56'00"	X	370719.01	중 부	8.775	옥서면 옥봉리 941	2014. 11.17.	철재
		Y	165967.40	126°37'25"	Y	166039.94					
				32.523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85	52504	X	270448.01	35°56'01"	X	370754.26	중부	14.695	옥서면 옥봉리 471-46	2014. 11.17.	철재
		Y	166243.90	126°37'36"	Y	166316.44					
				38.449							
86	52505	X	270508.11	35°56'03"	X	370814.36	중부	7.333	옥서면 옥봉리 518	2014. 11.17.	철재
		Y	166569.71	126°37'49"	Y	166642.25					
				31.094							
87	52506	X	270760.71	35°56'12"	X	371066.96	중부	4.276	옥서면 옥봉리 488	2014. 11.17.	철재
		Y	166559.02	126°37'49"	Y	166631.55					
				28.035							
88	52507	X	287494.12	36°05'12"	X	387799.96	중부	3.927	옥도면 연도리 산8-2	2014. 12.9.	철재
		Y	149256.87	126°26'15"	Y	149329.21					
				27.838							
89	52508	X	287377.16	36°05'08"	X	387683.00	중부	3.881	옥도면 연도리 산8-3	2014. 12.9.	철재
		Y	149382.67	126°26'20"	Y	149455.02					
				27.794							
90	52509	X	287203.46	36°05'02"	X	387509.30	중부	3.885	옥도면 연도리 산5-1	2014. 12.9.	철재
		Y	149438.36	126°26'22"	Y	149510.70					
				27.805							
91	52510	X	287095.55	36°04'59"	X	387401.40	중부	4.232	옥도면 연도리 산4	2014. 12.9.	철재
		Y	149644.52	126°26'30"	Y	149716.86					
				28.148							
92	52511	X	287026.92	36°04'57"	X	387332.77	중부	4.708	옥도면 연도리 176	2014. 12.9.	철재
		Y	149713.32	126°26'33"	Y	149785.67					
				28.625							
93	52512	X	286856.53	36°04'51"	X	387162.38	중부	8.632	옥도면 연도리 89-5	2014. 12.9.	철재
		Y	149626.53	126°26'30"	Y	149698.89					
				32.560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m)		세계측지계		투영 원점	정표고 (m)	소재지	관 측 일자	표지 재질	
				위도 (도-분-초)	평면직각좌표 (m)						
				경도 (도-분-초)							
		타 원 체 고 (m)									
94	52513	X	286633.85	36°04'44"	X	386939.70	중부	3.426	옥도면 연도리 122	2014. 12.9.	철재
		Y	149754.23	126°26'35"	Y	149826.59					
				27.360							
95	52514	X	286950.69	36°04'54"	X	387256.55	중부	4.592	옥도면 연도리 176	2014. 12.9.	철재
		Y	150046.38	126°26'46"	Y	150118.73					
				28.496							
96	52515	X	286363.87	36°04'35"	X	386669.72	중부	4.236	옥도면 연도리 산1-6	2014. 12.9.	철재
		Y	149964.48	126°26'43"	Y	150036.84					
				28.179							
97	52516	X	286314.83	36°04'34"	X	386620.68	중부	5.185	옥도면 연도리 산1-6	2014. 12.9.	철재
		Y	149901.33	126°26'41"	Y	149973.69					
				29.137							
98	52517	X	286527.86	36°04'40"	X	386833.71	중부	4.803	옥도면 연도리 산1-2	2014. 12.9.	철재
		Y	149684.88	126°26'32"	Y	149757.24					
				28.756							
99	52518	X	286385.64	36°04'36"	X	386691.48	중부	2.845	옥도면 연도리 산13-15	2014. 12.9.	철재
		Y	149227.78	126°26'14"	Y	149300.14					
				26.822							
100	52519	X	286462.80	36°04'38"	X	386768.64	중부	8.494	옥도면 연도리 127-1	2014. 12.9.	철재
		Y	149063.84	126°26'07"	Y	149136.21					
				32.476							
101	52520	X	286944.85	36°04'54"	X	387250.70	중부	6.792	옥도면 연도리 42	2014. 12.9.	철재
		Y	149574.84	126°26'27"	Y	149647.19					
				30.720							
102	52521	X	286920.21	36°04'53"	X	387226.06	중부	5.301	옥도면 연도리 55	2014. 12.9.	철재
		Y	149590.60	126°26'28"	Y	149662.95					
				29.230							
103	52522	X	286916.91	36°04'53"	X	387222.75	중부	3.050	옥도면 연도리 51-7	2014. 12.9.	철재
		Y	149632.03	126°26'30"	Y	149704.38					
				26.974							

※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063-454-3964)

고시 제2015-15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 1. 14

군산시장 (인)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번지		
성명(법인명)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		
하 천 명 칭	경포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전북 군산시 조촌동 250-5번지		
점 용 목 적	광역상수도 신설공사에 따른 하천점용		
점 용 면 적	86㎡(영구32㎡, 일시54㎡)		
최 초 허 가 일	2015년 1월 14일		
점 용 기 간	2015년 1월 14일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점용 : 2015년 1월 14일 ~ 2015년 3월 31일)		

군산시 고시 제 2015-16 호

도로명주소(부여·합병)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합병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 15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27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분할 : 1건

지번주소	합병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5-52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구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및 군산시 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의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5. 1. 9.

군 산 시 장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 주민수

구 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서명 주민수	비 고
군 산 시	221,571명	20,143명	

※ 기 타

19세 이상 주민투표권자 총수 및 서명 주민수 공표에 대한 문의가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군산시장(총무과 ☎454-2243, FAX 454-22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주민수

[2014. 12. 31일 기준]

읍면동	19세이상 내국인 (A)	재외 국민수 (B)	외국인 영주체류 자 (C)	선거권이 없는자(D)	주민투표 청구권자총수 (A+B+C-D)	연서 주민수	비고
계	221,310	195	315	249	221,571	20,143	
옥구읍	3,283	3	4	1	3,289		
옥산면	2,403	1	1	5	2,400		
회현면	3,155	1	1	4	3,153		
임피면	2,885	2	1	3	2,885		
서수면	2,657	3	0	3	2,657		
대야면	5,254	2	2	10	5,248		
개정면	3,238	0	2	2	3,238		
성산면	2,926	2	0	6	2,922		
나포면	2,298	2	1	2	2,299		
옥도면	3,682	3	1	7	3,679		
옥서면	3,727	11	2	3	3,737		
해신동	1,887	2	4	2	1,891		
월명동	6,494	11	37	16	6,526		
삼학동	6,222	7	13	7	6,235		
신평동	7,130	6	8	12	7,132		
중앙동	3,495	5	18	4	3,514		
홍남동	9,240	11	8	18	9,241		
조촌동	12,862	11	13	21	12,865		
경암동	7,221	9	8	12	7,226		
구암동	5,439	4	8	4	5,447		
개정동	2,857	0	2	3	2,856		
수송동	32,736	21	29	16	32,770		
나운1동	13,619	25	28	15	13,657		
나운2동	20,808	9	8	22	20,803		
나운3동	27,731	21	23	18	27,757		
소룡동	15,580	13	73	18	15,648		
미성동	12,481	10	20	15	12,496		

군산시 공고 제2015-53호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와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하여 우리시 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5. 1. 9.

군 산 시 장

□ 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구 분	19세이상 주민 총수	연서 주민수	비 고
군 산 시	221,431명	4,429명	

※ 기 타

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에 대한 문의가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군산시장(총무과 ☎454-2243, FAX 454-22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2014. 12. 31일 기준]

구 분	19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이 없는 자 (B)	주민 총수 (A-B)	연 서 주민수	비 고
	계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3년이상 영주체류 자격)				
계	221,680	221,310	195	175	249	221,431	4,429	
옥구읍	3,287	3,283	3	1	1	3,286		
옥산면	2,405	2,403	1	1	5	2,400		
회현면	3,157	3,155	1	1	4	3,153		
임피면	2,887	2,885	2	0	3	2,884		
서수면	2,660	2,657	3	0	3	2,657		
대야면	5,257	5,254	2	1	10	5,247		
개정면	3,239	3,238	0	1	2	3,237		
성산면	2,928	2,926	2	0	6	2,922		
나포면	2,301	2,298	2	1	2	2,299		
옥도면	3,685	3,682	3	0	7	3,678		
옥서면	3,740	3,727	11	2	3	3,737		
해신동	1,892	1,887	2	3	2	1,890		
월명동	6,539	6,494	11	34	16	6,523		
삼학동	6,240	6,222	7	11	7	6,233		
신평동	7,144	7,130	6	8	12	7,132		
중앙동	3,514	3,495	5	14	4	3,510		
홍남동	9,254	9,240	11	3	18	9,236		
조촌동	12,879	12,862	11	6	21	12,858		
경암동	7,234	7,221	9	4	12	7,222		
구암동	5,448	5,439	4	5	4	5,444		
개정동	2,859	2,857	0	2	3	2,856		
수송동	32,773	32,736	21	16	16	32,757		
나운1동	13,658	13,619	25	14	15	13,643		
나운2동	20,820	20,808	9	3	22	20,798		
나운3동	27,765	27,731	21	13	18	27,747		
소룡동	15,616	15,580	13	23	18	15,598		
미성동	12,499	12,481	10	8	15	12,484		

군산시 공고 제 2015-67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군산시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일

군산시장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 지원계획 : 40호 ※ 예산 범위 내 지원
- 대상주택
 - ◆ 대상주택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 「보증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임대하는 주택**(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 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
- 지원자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무주택자로서 군산에 거주**(군산시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하며 **2015년도에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
 - ◆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자(기입주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기간

- ◆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한다.
- ◆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최대 6년간 지원 가능)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금액 : 호당 690만원 한도로 한다.

○ 지원방법

- ◆ 전라북도 및 군산시에서 지원 비율에 따라 LH공사에 지급

○ 신청접수: 2015. 1월~12월중(연중)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군산시청 건축과(2층)

○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 신청자수가 공급물량 초과시 대상자 선정기준

- 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면적 (평)	14m ² (4.2)	26m ² (7.8)	36m ² (10.8)	43m ² (13.0)	46m ² (13.9)	55m ² (16.6)

② 장애인 가구

- ◆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③ 다자녀 가구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 3명이상 자녀

○ 신청서류

-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붙임)
- ◆ 장기임대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 ◆ 수급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 ◆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 ◆ 공문 또는 개인별로 휴대폰 문자 발송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 ◆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주택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계약 포기자 및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의함.

○ 문의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과(☎ 063-454-373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신청양식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의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현 거주지) :
- 현 거주지 거주면적 : m²
- 연 락 처 :
- 가족사항(동거인) : 명
- 가족 내 장애인이 있을 경우, 성명 : (장애등급 : 급)

희망주택 유형

- 장기임대주택 단지명 :
- 입주희망 평형 : m²
- 임대보증금 : 원 (무이자지원 신청금액 : 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무주택 세대주 조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 청 인 : ㉠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수급자증명서,인감증명서, 인감도장,신분증
2.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3.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